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7

발의연월일: 2020. 7. 15.

발 의 자: 박완주·이해식·윤재갑

오영환 • 박성준 • 김영배

임종성・황운하・이수진비

김경만 · 윤미향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당, 국회의원, 대통령후보자,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,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, 당대표경선후보자,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·감독하고, 조례의 제·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.

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,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

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7호 신설, 제11조,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, 제19조 등).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(이하 "지방의회의원후보자"라 한다)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 장후보자"를 "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의 원후보자"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"를 "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"로 한다.

6.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

제19조제3항제2호 중 "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" 를 "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후원회지정권자) 다음 각	제6조(후원회지정권자)
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후원	
회지정권자"라 한다)는 각각	
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	
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
	후보자(이하 "지방의회의원
	후보자"라 한다)
제11조(후원인의 기부한도 등) ①	제11조(후원인의 기부한도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	②
연간(대통령후보자등·대통령선	
거경선후보자·당대표경선후보	
자등· <u>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</u>	<u>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</u>
<u>방자치단체장후보자</u> 의 후원회	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
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	<u> 후보자</u>
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. 이하	
같다)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	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후원회의 모금·기부한도)	제12조(후원회의 모금·기부한도)

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(이하 "연간 모금 한도액"이라 하고,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신용카드·예금계좌·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, 그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없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 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(이하 "연간 기부한도액" 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하 게 해당 연도(대통령후보자등·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·당대표

①
<u>.</u>
 1. ~ 5. (현행과 같음)
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
6.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
6.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 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

경선후보자등·<u>국회의원후보자</u>의 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)에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(회계보고)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[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,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(회계보고)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]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- 제19조(후원회의 해산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(생략)
 - 2. 국회의원의 임기만료, 대통 령후보자등·<u>국회의원후보자</u>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

<u>국회의원주보자</u>
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
<u>방의회의원후보자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후원회의 해산 등) ①・②
(현행과 같음)
③
1. (현행과 같음)
2
국회의원후보자
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

<u>자</u> 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하	지방의회의원후보자
산되는 경우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